

보건비상사태를 연장하는 법률의 위헌 여부¹⁾

1. 사건개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하여 프랑스는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에 관한 2020년 3월 23일 제2020-290호 법률」, 「보건비상사태 연장 및 보완에 관한 2020년 5월 11일 제2020-546호 법률」, 그리고 「보건비상사태 종료에 관한 2020년 7월 9일 제2020-856호 법률」을 통하여 보건비상사태를 규율하고 있다. 보건비상사태는 2020년 3월 23일 법률에 의하여 프랑스 『공중보건법전』 제L.3131-12조 내지 제L.3131-20조에 신설되었으며, 『공중보건법전』 L.3131-12조는 보건비상사태가 “그 본질과 심각성이 국민의 건강을 현저히 위협하는 보건적 재난이 발발한 경우” 선포된다고 규정하였다. 2020년 3월 23일 법률로써 선포된 보건비상사태는 2020년 5월 23일 종료되었다. 이후 보건비상사태는 2020년 5월 11일 법률에 의거하여 2020년 5월 24일부터 2020년 7월 10일까지 선포되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자, 2020년 7월 9일 법률에 의거하여 해외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프랑스 영토 전역에 대한 보건비상사태가 2020년 10월 14일 데크레(décret)²⁾로써 2020년 10월 17일 선포되었다.³⁾

이러한 보건비상사태를 2021년 2월까지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건비상사태 연장 및 보건적 위기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2020년 11월 7일 가결되었다. 이에 대하여 상원의원 60인과 하원의원 60인은 제1조, 제2조⁴⁾ 및 제10조⁵⁾에 대하여 같은 날 사전적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고, 하원의원들은 제5조에 대하여도 제청하였다. 수상은 11월 9일, 헌법재판소에 대

1) Décision n° 2020-808 DC du 13 novembre 2020.

2) 데크레는 대통령 또는 수상이 발동하는 명령으로, 헌법에서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은 헌법 제37조의 독립명령으로 규정되며,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명령은 헌법 제21조의 집행명령으로 규율된다. 전학선, 프랑스의 법령체계 및 법치주의에 관한 연구, 공법학연구 제12권 제1호(2011), 199-229, 212-213.

3) Commentaire de la décision n° 2020-808 DC du 13 novembre 2020.

4) 심판대상법률 제2조 I 제1항 및 II도 심판대상에 포함되었고 이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이 있었으나, 이 조항은 보건비상사태 종료를 준비하는 임시체제의 구성 시기 연장에 관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는 제1조에 대한 판단과 유사한 이유로 합헌 결정을 하였으므로 설명을 생략한다.

5) 심판대상법률 제10조 I 역시 심판대상에 포함되었으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하여도 합헌 결정을 하였으나, 정부로 하여금 법률명령으로써 코로나19 팬데믹 확산 방지와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 심판대상조항이 정부위임권한을 규정한 헌법 제38조를 위반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프랑스 특유의 법률명령 체계와 관련된 것이므로 설명을 생략한다.

하여 헌법 제61조 제3항⁶⁾에 의거한 긴급한 경우를 근거로 들며 8일 내에 결정하도록 요구하였으며, 헌법재판소는 11월 13일 합헌 및 해석유보부 합헌 결정을 내렸다.⁷⁾

2. 제청인의 주장

제청인 하원의원들은 심판대상조항들이 보건의적 필요를 이유로 왕래의 자유,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기업의 자유 및 표현과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제청인 상원의원들은 의회가 새로이 개입하지 않은 채 보건비상사태를 4개월 연장하는 것은 국민건강의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가 인정된 원칙의 보호와 상기한 기본권의 보장 간의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주장하였다.⁸⁾

3. 판단

(1) 심판대상법률 제1조의 위헌 여부

1) 심판대상법률 제1조는 2020년 10월 14일 테크레로써 선포된 보건비상사태를 2021년 2월 16일까지 연장한다.

◎「보건비상사태 연장 및 보건의적 위기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2020년 10월 14일 제2020-1257호 테크레로써 선포된 보건비상사태는 2021년 2월 16일까지 연장된다.

2) 제청인 하원의원과 상원의원은 이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원의원에 의하면 이 조항은 국민건강 보호의 필요성이라는 명목하에 왕래의 자유,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기업의 자유 및 표현과 통신의 자유 등

6) 프랑스 헌법 제61조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1개월 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단, 정부의 요구에 따라 긴급한 경우, 그 기간은 8일로 단축된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국가별 법령집(프랑스 헌법·헌법재판소법), 2018, 39.

7) 해석유보부 합헌결정(décision de conformité sous réserve d'interprétation)은 일종의 한정합헌 결정으로서, 법률해석의 지침을 제시하거나, 법률해석의 공백을 채우거나, 법률을 축소해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형결정에 대한 명시적 근거는 없으나 헌법재판소는 자신에게 부여된 규범통제권한에 당연히 속하는 것으로 보고 오래 전부터 이러한 결정주문을 발해오고 있다. 김혜진, 프랑스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국사원과 파기원에 대한 효력을 중심으로-, 헌법논총 제22권(2011), 311-356, 320.

8) Commentaire de la décision n° 2020-808 DC du 13 novembre 2020.

헌법상 보장된 자유와 권리에 대한 비례적이지 않은 제한을 가하는 조치를 수반한다는 것이다. 상원의원에 의하면 이 조항은 의회의 새로운 개입 없이 보건비상사태를 4개월 동안 연장하여, 국민건강의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가 인정된 원칙의 보호와 상기한 자유와 권리의 보장 간의 불균형을 초래하였다는 것이다.

3) 1946년 헌법 전문 제11조는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 보건의 보호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한다.

4) 헌법은 입법자가 보건비상사태를 예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경우 입법자는 헌법적 가치가 인정된 목적인 국민건강의 보호와 프랑스 공화국 영토에 거주하는 모든 자에게 보장되는 자유·권리 간에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5) 첫 번째로, 보건비상사태는 공권력이 심각한 보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조치를 허용한다. 입법자는 보건비상사태에 관한 과학적 정보를 통하여 코로나19 팬데믹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현재의 환자 관리 체계의 상태를 고려할 때 프랑스 인구의 건강을 위협하는 보건적 재난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입법자는 전염병의 동태와 다가오는 겨울철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러한 확산이 앞으로 4개월 동안은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은 『공중보건법전』 제L.3131-19조⁹⁾에 규정된 학술위원회의 2020년 10월 19일 및 10월 26일자 의견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헌법재판소는 의회와 같은 성격의 일반적 재량이나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입법자가 판단한 보건적 재난의 존재 및 4개월 동안의 지속 가능성에 대하여 재차 판단할 수는 없다. 이러한 재량행사는 프랑스 국토 전역에 걸친 현 상황을 고려할 때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9) 『공중보건법전』 제L.3131-19조 “보건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경우 즉시 학술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학술위원회의 장은 공화국 대통령의 데크레를 통하여 임명한다. 학술위원회는 하원의장과 상원의장에 의하여 각각 임명된 자와, 데크레에 규정된 자격을 충족하는 자로 구성된다. 학술위원회는 주기적으로 보건상의 재난 및 이에 대한 학술적 지식과 본 법전 제L.3131-15조 내지 제L.3131-17조에 규정된 조치를 포함하여 보건상의 재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및 그 적용기간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학술위원회의 의견은 채택되는 대로 위원장을 통하여 수상과 공화국 대통령 및 상원의장에게 전달된다. 이 의견은 지체 없이 대중에게 공개된다. 학술위원회는 보건비상사태가 종료되는 즉시 해산된다.”

6) 두 번째로, 『공중보건법전』 제L.3131-15조 I 제1항¹⁰⁾에 근거하여 보건 비상사태 하의 각종 제한적 조치들은 공중보건의 보호만을 위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동조 III에 의하면 이러한 조치는 현재 당면한 보건상의 위험 해결에 엄격히 비례적이어야 하며 시간 및 장소적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경우 즉각적으로 종료된다. 사법부는 이러한 조치가 입법목적에 부합하고, 필요적이며 비례적인지 심사하여야 한다.

7) 세 번째로, 보건적 상황이 허용하는 경우 보건비상사태는 이를 설정한 법률이 정한 기한 내에 국무회의에서 제정한 데크레를 통하여 종료된다.

8) 그러므로 입법자는 다른 헌법적 요청을 위반하지 않은 채 보건비상사태를 2021년 2월 16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심판대상법률 제1조는 헌법에 합치한다.

(2) 심판대상법률 제5조의 위헌 여부

1) 심판대상법률 제5조는 필요한 경우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및 접촉자에 대한 정보를 그들의 동의 없이도 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요건을 규정한 2020년 5월 11일 법률 제11조를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¹¹⁾

◎ 「보건비상사태 연장 및 보건적 위기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보건비상사태 연장 및 보완에 관한 2020년 5월 11일 제2020-546호 법률」 제11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1° I 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a) 제1항 중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에 관한 2020년 3월 23일 제2020-290호 법률」 제4조에 의하여 선포된 보건비상사태의 종료시로부터 6개월” 부분은 “2021년 4월 1일까지”로 개정된다.

b) 제3항 중 “3개월 동안” 부분은 “제1항의 날짜까지”로 개정된다.

10) 『공중보건법전』 제L.3131-15조 I “보건비상사태가 선포된 프랑스 국토에서는 수상이 보건부 장관의 보고를 통하여 채택된 데크레로 공중보건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의 제한을 가할 수 있다.

① 사람 및 자동차의 통행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으며 대중교통 이용의 빈도와 조건을 규율할 수 있다.”

11) 프랑스 헌법 제34조의 입법권의 일환으로, 법률의 제정뿐만 아니라 법률의 개정 역시 입법부의 권한이며, 여기에는 법률로써 법률을 개정하는 권한 역시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된다.

c) 제6항 중 “제1항의 기간”은 “제1항의 날짜”로 개정된다.

2° II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a) 제1항 제1문 중 “생물학 검사” 부분은 “바이러스 및 혈청 검사”로 개정된다.

제1항 제2문 중 “의사 또는 의료생물학자 또는 그들의 감독하에 있는 자” 부분은 “테크레로 정한 바이러스 및 혈청 검사 권한이 있는 의료인 및 그들의 감독하에 있는 자”로 개정된다.

b) 제4항 중 “주소” 부분은 “주소 및 전화번호와 전자우편 주소”로 개정된다.

c) 제4항 다음에 제5항을 신설한다.

“5° 확진자 및 자가격리 대상인 확진의심자를 지원하는 사회보장기관에게 사전에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후 제공되는 개인정보”

3° III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a) - 제1문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생물학 검사 권한이 있는 의료인” 부분은 “바이러스 및 혈청 검사 권한이 있는 의료인”으로 개정된다.

- “노동법전” 부분 직후에 “교육기관 또는 고등교육기관을 전담하는 보건기관의 의료진”을 추가한다.

- “약사” 부분 직후에 “『공중보건법전』 제4부에 규정된 의료인 또는 수련 중인 학생”을 추가한다.

b) 제1문 직후에 제2문으로 “본조 II 제5항에 규정된 요건하에 관련자의 사회보장을 담당하는 기관은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를 추가한다.

[이하 생략]

※ 「보건비상사태 연장 및 보완에 관한 2020년 5월 11일 제2020-546호 법률」 제11조

I.

1° 『공중보건법전』 제1110-4조의 예외로,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에 관한 2020년 3월 23일 제2020-290호 법률」 제4조에 의하여 선포된 보건비상사태의 종료시로부터 6개월의 기간까지 확진자 및 접촉자의 개인정보는 당사자의 사전 동의 없이도 국사원 테크레로 정하고 보건부 장관이 시행한 정보관리체계에서 수집되고 제공될 수 있다.

2° 보건부장관과 공중보건청 및 지방공중보건청은 제1항에 규정된 정보관리체계를 국사원 테크레로 정한 사항으로써 관리할 수 있다.

3° 정보관리체계에 편입된 개인정보는 수집 후 3개월 동안 보존된다.

4° 보건과 관련된 개인정보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및 혈청, 그리고 국사원 테크

례로 정한 의료 목적과 관련되어서만 이용될 수 있다.

5° 국사원은 확진자 및 접촉자의 개인정보가 정보관리체계에 편입되는 경우 이에 대한 관련자들의 접근권과 관련된 사항을 테크레로 정한다.

6° 제1항의 기간은 법률로써 연장되어야 한다.

II. I 에 규정된 정보관리체계는 다음의 목적이 있다.

1° 생물학 검사 또는 의학영상 검사를 통하여 감염 여부를 파악하고 양성 및 음성 결과를 수집하며 감염 요인을 파악한다. 이러한 정보는 환자에 대한 고지의무가 있는 의사 또는 의료생물학자 또는 그들의 감독하에 있는 자에 의하여 제공된다.

2° 확진자와의 접촉 정보를 수집하여 감염 위험이 있는 자를 파악하며, 필요한 경우 집단 단위의 보건 관련 설문을 시행한다.

3° 확진자 및 확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한 자가격리 및 지원을 시행한다.

4° 국가 차원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역학조사를 시행하고 바이러스의 확산 경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성과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삭제한다.

확진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접촉자에게 제공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확진자와 동선이 중복된다는 것을 알리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개발과 실행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정보가 제공된다.

III. 본조 I 에 규정된 기관 외에도 군 보건기관, 지방 보건관리기관, 사회보장기관, 의료보장기관, 『공중보건법전』 제L.1411-11-1조에 규정된 1차 의료기관, 요양원, 보건소, 『노동법전』 제L.4622-1조에 규정된 직장의료기관 및 그 구성원인 의사, 약사, 『공중보건법전』 제L.6327-1조에 규정된 보건지원기관, 『공중보건법전』 제L.6327-6조에 규정된 지역보건기관, 「보건체계의 조직과 변경에 관한 2019년 7월 24일 제2019-774호 법률」 제23조 II에 규정된 의료기관 및 의학영상 검사와 생물학 검사 권한이 있는 의료인은 본조 II에 규정된 목적에 철저히 부합할 경우에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당사자의 사회보장을 담당하는 기관은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접근권이 인정되는 자는 업무상 비밀유지 의무가 있다. 이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형법전』 제226-13조에 의하여 처벌된다.

[이하 생략]

(*) 2020년 5월 11일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어 효력 상실

2) 제청인 하원의원은 심판대상법률 제5조가 개인정보의 수집 및 관리 기

간을 2021년 4월 1일까지 연장하고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3)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는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제2조로부터 도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등록, 보존, 참고 및 전달은 공공의 이익에 의하여 정당화되어야 하며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고 비례적인 방법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개인정보가 의료 정보의 성격을 띠는 경우에는 이를 다루는 데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¹²⁾

4) 심판대상법률 제5조가 2020년 5월 11일 법률 제11조 I을 개정하는 이유는 해당 조항에 규정된 개인정보 처리는 2021년 4월 1일까지는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있다. 심판대상법률 제5조는 이러한 개인정보를 관련 의료인과 확진자 또는 접촉자의 자가격리 및 예방병동에서 치료를 담당하는 기관에 공개하기 위하여 2020년 5월 11일 법률 제11조 III을 개정한다.

5) 첫 번째로, 2020년 5월 11일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결정이유 63 내지 78에서 실시한 근거와 결정이유 67, 73 및 74에서 실시한 유보조건하에 2020년 5월 11일 법률 제11조에 규정된 정보관리체계에 대하여 일부위헌 및 해석유보부 합헌결정을 내렸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상기한 결정의 결정이유 63에서 실시하였듯이, 입법자는 2020년 5월 11일 법률 제11조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감염경로를 특정하여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책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입법자는 국민건강의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가 인정된 입법목적을 추구하였다. 상기한 결정의 결정이유 66 및 67에서 실시하였듯, 2020년 5월 11일 법률 제11조에 규정된 정보관리체계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범위는 해당 체계의 목적에 필수적인 정보로 엄격히 제한된다.

※ 2020년 5월 11일 결정(Décision n° 2020-800 DC du 11 mai 2020) 요지

63. 첫 번째로, 입법자는 심판대상조항을 제정하면서 감염경로 특정을 통하여 코

12)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보호가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2012년 3월 22일 결정(Décision n° 2012-652 DC du 22 mars 2012)에서 헌법재판소는 “...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의 자유는 사생활에 대한 존중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수집, 등록, 보존, 조회 및 전달은 공익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하며, 공익적 목적을 위해 적합하고, 비례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입법자는 국민건강의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가 인정된 입법목적을 추구하였다.

64.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및 제공은 다음의 네 가지 목적 중 하나를 위할 때에만 실행될 수 있다. i) 의학적 검사를 시행하고 이를 통한 결과물을 획득하여 코로나19 확진자를 식별하기 위한 목적 ii) 확진자와 접촉한 자를 식별하기 위한 목적 iii) 자가격리 및 그 과정에서의 사회보장 차원의 지원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 iv) 바이러스에 대한 국가적 차원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역학조사를 시행하기 위한 목적이다.
65.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은 예외적으로 확진자와 동선이 중복된다는 것을 알리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개발과 실행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정보가 제공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66. 두 번째로, 입법자는 수집, 처리 및 제공의 대상이 되는 보건 관련 개인정보의 범위를 코로나19와 관련된 바이러스 및 혈청 검사에 관한 정보와 국사원 테크레로 정한 생물학 및 의학영상 검사에 관한 정보로 한정하였다. 한편, 상술한 네 가지 목적 중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목적과 관련된 개인정보는 확진자 및 감염 가능성이 있는 접촉자의 신상과 관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입법자는 정보관리체계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를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목적과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 것이다.
67. 역학조사 및 바이러스 연구와 관련된 네 번째 목적과 관련된 개인정보는 당사자의 성과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삭제된 채로 공개된다. 이러한 삭제범위가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한, 당사자의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역시 포함하여야 한다.
68. 세 번째로, 보건부장관과 공중보건청 및 지방공중보건청, 군 보건기관, 지방보건관리기관, 사회보장기관, 의료보장기관, 『공중보건법전』 제L.1411-11-1조에 규정된 1차의료기관, 요양원, 보건소, 『노동법전』 제L.4622-1조에 규정된 직장의료기관 및 그 구성원인 의사, 약사, 『공중보건법전』 제L.6327-1조에 규정된 보건지원기관, 『공중보건법전』 제L.6327-6조에 규정된 지역보건기관, 「보건체계의 조직과 변경에 관한 2019년 7월 24일 제2019-774호 법률」 제23조 II에 규정된 의료기관 및 의학영상 검사와 생물학 검사 권한이 있는 의료인은 본조 II에 규정된 목적에 철저히 부합할 경우에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69. 당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이러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가 이렇게 확대된 것은 전염병 확산 방지라는 목적 달성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70. 다만 이러한 자의 범위에는 관련자의 사회보장을 담당하는 기관이 포함되어 있다. 사회보장이 전염병 확산 방지라는 목적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므로, 상술한 개인정보는 사전에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후 사회보장 담당기관에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제11조 III 제2문은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71. 나아가 제11조 III에 의하면 이러한 기관들은 심판대상법률에 규정된 목적에 철저히 부합할 경우에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동조 V는 정보 제공의 범위, 기간 및 규정을 국사원 테크레로 정하도록 한다.
72. 한편, 제11조 II에 의하면 이러한 기관들은 확진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접촉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나아가 이들은 업무상 비밀유지 의무가 있으며,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형법전』 제226-13조에 의하여 처벌된다.
73. 엄격한 비밀유지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수집, 처리 및 제공은 규제당국, 특히 개별 담당자들의 임무이며, 이들은 정보관리체계 및 그에 대한 접근관련성 전반을 관리하여야 한다.
74. 제11조 V는 상기한 기관들로 하여금 해당 정보를 국사원 테크레로 정한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들은 자의적으로 행동할 여지가 있다.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 제공은 결정이유 71 내지 73에 실시된 필요성 및 비밀유지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실행되어야 한다.
75. 다섯 번째로, 제11조가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보건 관련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 및 제공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처리와 관련된 개인의 보호 및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에 관한, 그리고 95/46 유럽지침을 폐지하는 2016년 4월 27일의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의 규칙」이나 「정보, 파일 및 자유에 관한 1978년 1월 6일 법률」을 위반하는 정도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
76. 여섯 번째로, 제11조에 규정된 정보관리체계는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에 관한 2020년 3월 23일 제2020-290호 법률」 제4조에 의하여 선포된 보건비상사태의 종료시로부터 6개월의 기간까지 운영될 수 있다. 정보관리체계에 편입된 개인정보는 수집 후 3개월 동안만 보존되고, 그 이후에는 폐기되어야 한다.
77. [생략]

78. 그러므로 결정이유 67, 73 및 74의 유보조건하에 심판대상법률 제11조 I, II 및 III과 V의 나머지 규정들은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이러한 조항들은 헌법적 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며 명확성의 원칙 위반이나 권한남용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에 합치한다.

6) 두 번째로, 입법자는 바이러스를 진단하고 감염 경로를 특정하기 위하여 테크레로 정한 바이러스 및 혈청 검사 권한이 있는 의료인에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2020년 5월 11일 법률 제11조 III에 의거하여 이러한 의료인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의료인의 업무는 정보관리체계의 성립 목적에 엄격히 부합하여야 한다.

7) 한편, 심판대상조항이 확진자 또는 확진의심자의 지원을 담당하는 사회보장기관에게 이러한 정보관리체계상의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정보제공은 전염병 확산 방지라는 목적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사회보장기관의 특성상 사전에 당사자의 동의를 받을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다. 또한 이 정보제공의 범위는 해당 사회보장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정보로 엄격히 제한된다.

8) 그러므로 입법자는 팬데믹의 확산에 따른 위험이 2021년 4월 1일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예견하여, 2020년 5월 11일 법률 제11조가 해당 날짜까지 연장되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상술한 결정근거로 미루어 보아 이러한 조치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명백히 부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9) 2020년 5월 11일 결정의 결정이유 73 및 74에 규정된 유보조건과 동일한 조건하에 심판대상법률 제5조는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10) 따라서 심판대상법률 제5조로 인해 개정되는 2020년 5월 11일 법률 제11조 I 제1항 중 “2021년 4월 1일까지” 부분 및 제11조 III 제1문 중 “바이러스 및 혈청 검사 권한이 있는 의료인” 부분, 그리고 제11조 III 제2문 중 “본조 II 제5항에 규정된 요건하에 관련자의 사회보장을 담당하는 기관은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부분은 어떠한 헌법적 요청도 위반하지 않아, 상기한 유보조건하에 헌법에 합치한다.

(4) 기타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직권으로 위헌 여부를 심사하지 않으며 제청되지 않은 기타 조항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4. 주문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제1조

결정이유 3. (2) 9)¹³⁾의 유보조건하에, 다음의 조항은 헌법에 합치한다.

○ 「보건비상사태 연장 및 보건의적 위기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여 개정되는 2020년 5월 11일 제2020-546호 법률 제11조 I 제1항 중 “2021년 4월 1일까지” 부분

○ 「보건비상사태 연장 및 보건의적 위기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여 개정되는 2020년 5월 11일 제2020-546호 법률 제11조 III 제1문 중 “바이러스 및 혈청 검사 권한이 있는 의료인” 부분

○ 「보건비상사태 연장 및 보건의적 위기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여 개정되는 2020년 5월 11일 제2020-546호 법률 제11조 III 제2문 중 “본조 II 제5항에 규정된 요건하에 관련자의 사회보장을 담당하는 기관은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부분

제2조

「보건비상사태 연장 및 보건의적 위기의 관리에 관한 법률」 중 다음의 조항은 헌법에 합치한다.

13) 원문에서는 24.

- 제1조
- 제2조 I 제1항 및 II
- 제10조 I

제3조

이 결정은 프랑스 공화국 관보에 공고된다.

5. 이 결정의 의의

이 결정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비상사태를 연장하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건비상사태와 이에 따른 일련의 조치들이 국민건강 또는 공중보건의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가 인정된 원칙의 보호를 위한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특히 확진자 및 접촉자의 정보관리체계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범위는 해당 체계의 성립 목적에 필수적인 정보로 엄격히 제한된다고 하였으며, 의료인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의료인의 업무는 정보관리체계의 성립 목적에 엄격히 부합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보건비상사태에 관한 기존의 해석유보부 합헌결정을 존중하여 당해 사안에서 동일한 유보조건을 내세웠으며, 이에 따라 사회보장기관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때에는 당사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다. 이 결정은 보건비상사태하에서 국민건강의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가 인정된 원칙과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로써 보장되는 개인정보의 보호 간의 균형을 추구하고자 하였다.